5 ·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윤재옥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555

발의연월일: 2021. 1. 21.

발 의 자: 윤재옥 · 안병길 · 김희곤

정희용 · 김용판 · 김승수

류성걸 · 김예지 · 홍석준

양금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그 밖의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, 5·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및 5·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은 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 진료하도록 하며, 국가보훈처장은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신체적 기능 회복을 위한 의학적 재활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함.

그런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보훈병원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5·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대한 근거가 없어 진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, 5·18민주유공자등은 신체적 기능 훼손에 따른 정신적 외상이 동반될 수 있는 만큼이들에 대한 심리재활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

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5·18민주유공자및 그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업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여 5·18민주유공자 등에대한 의료지원 및 예우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(안 제34조의2 및 제37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4조의2(재난상황에서의 진료) 국가는 제34조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외의 의료기관에 제34조제5항에 따른 진료를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,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.

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7조의2(심리적 재활 등) ① 국가보훈처장은 5·18민주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,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·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<신 설></u>	제34조의2(재난상황에서의 진료)
	국가는 제34조제5항 전단에도
	불구하고 「재난 및 안전관리
	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이
	발생하여 「한국보훈복지의료
	공단법」 제7조에 따른 보훈병
	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
	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
	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
	의료기관에 제34조제5항에 따
	른 진료를 위탁할 수 있다. 이
	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
	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
	며,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
	부담한다.
<u><신 설></u>	제37조의2(심리적 재활 등) ① 국
	<u>가보훈처장은 5·18민주유공자</u>
	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심리
	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
	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
	관한 시책을 마련하고, 그 사업
	을 수행하여야 한다.
	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

·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